2024년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철도안전법 제17조(운전면허시험) 및 제21조의8(관제자격증명시험), 동법 시행규칙 제25조(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) 및 제38조의8(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)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철도자격 취득절차

신체검사 적성검사 ⇨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⇨ 필기/학과 시험 합격 ⇨ 기능/실기 시험 합격 ⇨ 면허증/자격증 교부

※ 단,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필기시험 응시가능

(참고) 철도차량운전면허 : 필기 및 기능시험,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: 학과 및 실기시험

□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일정

❍ 철도종사자 자격시험(철도차량운전면허 / 관제자격증명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회차</th><th colspan="2">필기(학과)시험</th><th colspan="2">기능(실기)시험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
<tr><th>접수</th><th>시험일</th><th>접수</th><th>시험일</th></tr>
<tr><td>제1차</td><td>1/3~4</td><td>1/11 10:00, 13:30
1/18 10:00, 13:30</td><td>1/22~23</td><td>2/1~3/24</td><td>제2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2차</td><td rowspan="2">2/1~2</td><td>2/8 10:00</td><td rowspan="2">2/13~14</td><td rowspan="2">2/23~3/31</td><td>디젤, 장비</td></tr>
<tr><td>2/8 13:30</td><td>고속, 관제</td></tr>
<tr><td>제3차</td><td>4/1~2</td><td>4/11 10:00, 13:30
4/18 10:00, 13:30</td><td>4/22~23</td><td>5/2~6/23</td><td>제2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4차</td><td rowspan="2">5/1~2</td><td>5/9 10:00</td><td rowspan="2">5/13~14</td><td rowspan="2">5/24~6/30</td><td>디젤, 장비</td></tr>
<tr><td>5/9 13:30</td><td>고속, 관제</td></tr>
<tr><td>제5차</td><td>7/1~2</td><td>7/11 10:00, 13:30
7/18 10:00, 13:30</td><td>7/22~23</td><td>8/1~9/22</td><td>제2종,
노면전차(최초 시행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6차</td><td rowspan="2">8/1~2</td><td>8/8 10:00</td><td rowspan="2">8/12~13</td><td rowspan="2">8/23~9/29</td><td>디젤, 장비</td></tr>
<tr><td>8/8 13:30</td><td>고속, 철도관제,
도시철도관제(최초 시행)</td></tr>
<tr><td>제7차</td><td>10/1~2</td><td>10/10 10:00, 13:30
10/17 10:00, 13:30</td><td>10/21~22</td><td>10/31~12/22</td><td>제2종,
노면전차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제8차</td><td rowspan="2">11/1~4</td><td>11/7 10:00</td><td rowspan="2">11/11~12</td><td rowspan="2">11/22~12/29</td><td>디젤, 장비</td></tr>
<tr><td>11/7 13:30</td><td>고속, 1종, 철도관제,
도시철도관제</td></tr>
</table>

* 기능 및 실기 시험일정은 필기 및 학과시험 합격인원, 평가에 필요한 장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 기능 및 실기시험 결과는 당일 시험 종료 후 18시 이후 확인 가능

*** 도시철도관제 자격증명 시험 및 노면전차 운전면허 시험 시행 시 변경 공지 예정

□ 시험 방법 및 장소

❍ 필기 및 학과시험

- 시험 방식 : 객관식 4지 선다형, CBT 시험(필요시 PBT 시행)
- 시험 장소 : 공단 자격 시험장 8개소* 총 178석

* 구로(67석), 수원(14석), 춘천(14석), 대전(19석), 전주(5석), 광주(16석), 대구(19석), 부산(24석)

❍ 기능 및 실기시험

- 시험 방식 :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(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) 또는 실제 차량
- 시험 장소 : 공단 기능 시험장(의왕)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

□ 응시자격 (접수일 기준)

❍ 신체검사,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, 해당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(단,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가능)

❍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(면허/관제 동일)

❍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,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❍ 원서교부 및 접수

- 인터넷 : TS국가자격시험(http://lic.kotsa.or.kr/railroad/)
  (접수기간 시작일 09:00 ~ 접수기간 종료일 18:00)

□ 환불안내

❍ 필기 및 학과 시험 :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

❍ 기능 및 실기 시험 :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

※ 환불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환불 적용

□ 구비서류

❍ 응시원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

❍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판정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)

❍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판정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)

❍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1부 (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)

❍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 1부(시행규칙 별표 7 제6호바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)

❍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 (면허 소지한 사람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.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)

❍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1부 (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)

※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,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□ 시험 응시수수료 (부가세 포함)

❍ 철도차량운전면허

- 필기시험 수수료 : 77,000원 (운전면허 공통)
- 기능시험 수수료

구분	실제차량	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
고속철도차량	550,000원	253,000원
제1종 전기차량	242,000원	231,000원
제2종 전기차량	220,000원	242,000원
디젤차량	330,000원	220,000원
철도장비	220,000원	220,000원

※ 노면전차의 경우 '24년도 상반기 수수료 산정 예정

❍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 (자격증명 공통)

- 학과시험 수수료 : 77,000원
- 실기시험 수수료 : 206,500원

❍ 응시수수료 감면

- 응시원서 접수 당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자격시험 응시수수료 50% 감면
- 환불 마감일 전까지 제출서류 우편(등기)으로 제출
  - · 제출 서류 : 수수료감면신청서 1부, 증명서(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) 1부, 통장사본(본인명의) 1부
  - · 등기 주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(율곡동) 한국교통안전공단 5층 철도안전처(☎054-459-7329)

□ 시험과목 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8조의7)

❍ 응시자구분

- 일반응시자
- 철도관련 업무경력자
-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

-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취득자

❍ 응시자별 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[별표10] 및 동규칙 제38조의7[별표11의4] 참고

□ 합격자발표

❍ 발 표 :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: http://lic.kotsa.or.kr/railroad/

❍ 문 의 :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(T.054-459-7329,7331~6)

❍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.

※ 기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.

□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및 교부

❍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대상자

- 최종 시험합격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사람

❍ 발급신청 및 교부

- 인터넷 발급 신청 : http://lic.kotsa.or.kr/railroad/을 통해 TS국가자격시험 로그인 후, 면허/자격증 발급 신청
- 방문 신청 :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, 7개 지역본부(서울, 인천, 경기남부, 대전충남, 대구경북, 부산, 광주전남) 및 8개 검사소(강릉, 목포, 세종, 안동, 진주, 충주, 포항, 홍성)

※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은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.

❍ 신청구비서류

- 발급 신청서 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또는 제24호의7 서식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- 사진 1매 (3.5cm×4.5cm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)

❍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 수수료

- 수수료 : 16,500원 (부가세 포함)
- 우편료 : 2,530원 ('23.11. 기준으로 변동 가능)

TS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